# 직제규정

```
제정
         2006.
                8.
                   8.
개 정(1)
         2006. 12. 19.
개 정(2)
         2007.
                7.
                   3.
개 정(3)
         2008.
                3. 17.
개 정(4)
         2008.
                9. 01.
개 정(5)
         2009.
                2. 17.
개 정(6)
         2010.
                3. 18.
개 정(7)
         2010.
                6.
                   7.
개 정(8)
         2011.
                2. 25.
개 정(9) 2011.
                8. 23.
개 정(10) 2011. 12. 28.
개 정(11) 2012.
                7. 11.
개 정(12) 2013.
                6. 26.
개 정(13) 2014.
                1. 24.
개 정(14) 2014.
                2. 13.
개 정(15) 2014.
                8.
                    4.
개 정(16) 2014. 10.
                    7.
개 정(17) 2015.
                    7.
개 정(18) 2015.
                9. 16.
개 정(19) 2016.
                2. 29.
개 정(20) 2016.
                   3.
                8.
개 정(21) 2017.
                6. 23.
개 정(22) 2018. 12. 21.
개 정(23) 2019. 12. 20.
개 정(24) 2020.
                6. 22.
개 정(25) 2021.
                8. 23.
개 정(26) 2021. 12. 22.
개 정(27) 2022. 12. 22.
개 정(28) 2024.
               2.
                   7.
개 정(29) 2024. 12. 19.
개 정(30) 2025. 4.
```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조직과 직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① "부문" 이라 함은 본부, 부서 및 지사 등을 관장하는 조직단위를 말한다.
  - ② "본부"라 함은 부서를 관장하는 조직단위를 말한다.
  - ③ "부서"라 함은 실을 말한다.
  - ④ "지사"라 함은 국내·외의 지사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 제2장 조직

- 제3조 (조직편제) ①공사의 조직으로서 부문, 준법감시인, 본부 및 부서를 두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서 내에 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공사는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각 부서의 조직 및 분장업무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공사의 조직도는 [별표]과 같다.
- 제4조 (전문위원회)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사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 2. 공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각 부문의 협조 또는 통제가 필요한 경우
  - 3. 기타 회의에 의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5조 (부문 및 본부)** ①부문으로는 투자운용부문, 투자관리부문과 경영관리부문을 둔다.
  - ② 본부로는 미래전략본부, 증권운용본부, 대체투자본부를 둔다.
  - ③ 부문 및 본부별 소관부서는 [별표]의 조직도와 같으며, 사장은 필요한 경우소관 본부 및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의2 (준법감시인)** ①공사는 공사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설치·운영한다.

②준법감시인의 소관부서는 [별표]의 조직도와 같으며, 공사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부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2. 자산배분실

3. 거시ESG실

4. 주식운용전략실

5. 글로벌주식운용실

6. 퀀트주식운용실

7. 채권운용실

8. 사모주식투자실

9. 부동산투자실

10. 인프라투자실

11. 절대수익투자실

12. 뉴욕지사

13. 런던지사

14. 싱가포르지사

15. 샌프란시스코사무소

16. 뭄바이사무소

17. 증권리스크관리실

18. 대체리스크관리실

19. 성과분석실

20. 법무실

21. 투자오퍼레이션실

22. 투자시스템실

23. 경영기획실

24. 대외협력실

25. 인사실

26. 인재경영실

27. 경영지원실

28. 정보시스템실

29. 준법지원실

30. 전략조정실

31. 감사실

제7조 (조직의 명칭) 사장은 필요한 경우 부문, 본부 및 부서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 제3장 직제

**제8조 (직원)** ①공사의 직원은 이사대우, 일반직원과 별정직원으로 구분한다. ②이사대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직급 및 직급별 보임) 직원의 직급 및 직급별 보임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0조 (직책 및 역할) ①부문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업무를 총괄·지 위하는 부문장을 둔다.
  - ②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부서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본부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업무를 총괄지휘하는 본부장을 둔다.
  - ④부서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업무를 통할하며, 소속부서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장을 둔다.
  - ⑤팀에는 부서장을 보좌하며 소속팀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팀장을 둘 수 있다.
  - ⑥지사 또는 사무소에는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지사장 또 는 사무소장을 둔다.
- 제11조 (직무의 대행) ①부문장, 준법감시인 또는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무대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부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서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서장의 직상위자가 사장의 승인을 얻 어 부문내 직원 중에서 부서장의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장 기타

- 제12조 (전문역) ①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문 내에 전문역을 둘 수 있다.
  - ②전문역은 부문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업무를 분장한다.
- 제13조 (자문위원)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원 외에 자문위원을 둘수 있다.
- 제14조 (주재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외에 주재원을 둘 수 있다.
- 제15조 (임시조직)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장은 임시조직과 임시직급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명칭, 목적, 구성 및 분장업무에 관하여는 설치시에 사장 이 정하다.

## 부 칙(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직제는 2006. 10. 30 부터 시행한다.

### 부 칙(1)

제1조 (시행일) 이 직제는 2006. 12. 19 부터 시행한다.

#### 부 칙(2)

제1조 (시행일) 이 직제는 2007. 7. 3 부터 시행한다.

## 부 칙(3)

제1조 (시행일) 이 직제는 2008. 3. 17 부터 시행한다.

## 부 칙(4)

제1조 (시행일) 이 직제는 2008. 9. 1 부터 시행한다.

## 부 칙(5)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09. 3. 2 부터 시행한다.

## 부 칙(6)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0. 3. 19부터 시행한다.

### 부 칙(7)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0.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8)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1. 3.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9)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1. 8. 23부터 시행한다.

### 부 칙(10)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11)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2. 7. 16부터 시행한다.

## 부 칙(12)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3.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13)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4. 1. 27부터 시행한다.

#### 부 칙(14)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4. 2. 13부터 시행한다.

## 부 칙(15)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4. 8. 5부터 시행한다.

## 부 칙(16)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4. 10. 08부터 시행한다.

## 부 칙(17)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5. 4. 7부터 시행한다.

## 부 칙(18)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5. 9. 21부터 시행한다. 다만, 투자오퍼레이션팀은 리스크관리본부장과 준법감시인의 겸직이 해소될 때까지 현재의 경영관리본부 소속을 유지한다.

### 부 칙(19)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6. 3. 2.부터 시행한다. 다만, 투자오퍼레이션팀은 리스크 관리본부장과 준법감시인의 겸직이 해소될 때까지 경영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부 칙(20)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6. 8. 5.부터 시행한다.

#### 부 칙(21)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2)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19.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3)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4)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20.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다른 내규상의 본부 및 부서의 명칭은 이 직제 시행과 동시에 이 규정상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25)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21. 8.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다른 내규상의 본부 및 부서의 명칭은 이 직제 시행과 동시에 이 규정상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26)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7)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8)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24. 2. 7부터 시행한다.

### 부 칙(29)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25.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30)

**제1조(시행일)** 이 직제는 2025. 4. 7부터 시행한다.

[별표] KIC 조직도 - 3부문, 3본부, 26실, 3지사, 2사무소

